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3. 23 선고 2020가단12187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

피고1. B

2. C

피고2의 소송대리인 B

변론 종결2021. 3. 9.

판결 선고2021. 3. 23.

주 문

1. 피고 B는 원고에게 15,161,141원과 그 중 4,532,134원에 대하여는 2020. 5. 1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%, 862,870원에 대하여는 2020. 5. 1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.9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7 지분에 관하여,
 - 가. 피고들 사이에 2015. 8. 4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
 - 나. 피고 C는 피고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(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양수금 합계액인 15,161,141원과 그 중 4,532,134원에 대하여는 2020. 5. 1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39%, 862,870원에 대하여는 2020. 5. 1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7.9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그리고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/7 지분에 관하여, 피고들 사이에 2015. 8. 4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.

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이재희

별지